

해도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시급하고, 넷째, 어선이나 연안선들은 선교 공간의 협소하고 항해당직 근무자들이 하위 면허증 소지자 또는 무면허 선원들임을 감안하여 육상의 자동차용 도로지도책과 같은 해도책이나 벽걸이형 등 소형선박용 해도 간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안의 주요항로나 좁은수로 등에 침로선을 점선으로 기입해주고 해도간 연결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곳의 포함구역을 조정하며 해도 종이품질을 개선하는 등 기존 해도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 여섯째, 현재 연안의 주요항로와 선박통항량 등을 감안하여 부산-울산-포항 간 해도와 인천항-선감도-격렬비열도간 해도 등 몇 개소의 신규해도 발행이 필요하다. 일곱째, 전국의 항포구 숫자에 비하여 해도 판매소가 22개소로 적은데 수협을 이용하는 등 판매소를 확대해주어야 하며 해도를 지방판매소에 보관기간중 소개정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해본 몇가지 개선방안만 시행되어도 해도와 관련된 연안선박이나 어선들의 해양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해도가 더 이상 특정선박이나 일부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모든 승선자가 쉽고 편리하게 해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7. 유조선 운항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 보험보상을 중심으로 -

해사수송과학과 윤 대 근  
지도교수 박 상 갑

最近 에너지 需要의 增加와 石油化學 産業의 發達에 따라 원유 및 油加工 化學物質의 海上運送이 增加하고 있다. 유류의 해상운송 증가로 유조선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油槽船 事故는 海洋으로 유입되는 油類에 의해 심각한 海洋汚染을 야기한다. 이러한 油槽船은 타 선박에 존재하는 危險要素에 추가하여 油槽船 특유의 危險要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事故가 발생할 때에는 제2의, 제3의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유조선 사고에 대한 方案이 講究되고 있지만 다발하는 油槽船事故에 따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다 根源的이고 綜合的인 油槽船 運航에 따른 危險管理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油槽船 運航上의 근원적인 갖가지 危險要素를 알아보고, 그러한 運航上의 危險要素를 事前·事後의인 손실통제와, 선박 및 유류의 자체 피해의 신속한 복귀 및被害者의 보상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油槽船의 運航을 원활히 하기위한 危險管理 方案을 摸索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조선 운항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으로서 油槽船 運航에 따른 危險要素의 認識, 그러한 危險要素에 따른 事故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위험통제, 또한 散在된 危險으로 인한 불가피한 事故에 대한 사후적인 손실통제, 그러한 사후적인 손실통제의 일환으로서의 각종 국제기금 및 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1. 油槽船 運航에 따른 危險管理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節次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危險分析- 危險認識段階로서 체크리스트, 缺陷樹 分析, 危險論理樹, 機能블럭圖表에 의한 危險分析
  - ② 危險統制
    - ㉠ 事前的 危險統制- 船員教育/訓練, 監査/不適合管理, 安全事故對策, 事前防除活動에 의한 危險統制
    - ㉡ 事後的 危險統制- 事後防除活動에 의한 危險統制
  - ③ 危險財務
    - ㉠ 轉嫁- 保險에 의한 轉嫁 (船舶保險) 法的責任 (FC, CLC, P&I 保險)
    - ㉡ 保有- 準備金 設定
2. 油槽船 運航에 있어 危險을 保險에 부보하지 않으면 危險管理를 履行할 수 없다. 즉 油槽船 자체의 物的損害는 船舶保險으로, 法的責任에 대해서는 P&I保險, 國際民事責任協約(CLC), 國際基金(FC)을 이용함으로써 效率的인 危險管理를 추구할 수 있다.

## 18. 상당주의의무 이행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선박 보험을 중심으로

해사수송학과 이 상 욱  
지도교수 박 상 갑

본 연구는 선주, 선박회사, 선박관리자, 용선자 및 운송인 등의 상당주의의무이행에 대하여 선박보험을 중심으로 관련 위험약관을 분석하고, 상당주의 의무의 적극적 이행과 그에 따른 실익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선박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위험들 가운데 피보험자, 선주, 선박관리인들의 상당주의의무가 선행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들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운송인으로서의 상당주의의무와 관련 국제규칙, 아이에스엠 코드(ISM code).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은 Y2K문제와 그에 대한 보험약관들에 대하여도 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본 논문의 핵심내용인 해상보험과 상당주의의무에 대한 의의와 관련내용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2장에서 다루었으며 제 3장에서는 실제 해상보험 관련 법 및 약관에 있어서 상당주의의무를 요건으로 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집중으로 다루었고, 참고적으로 선주 또는 운송인에 의해 상당주의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해상화물운송 분야의 법 및 약관도 관련해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당주의의무이행에 따른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체적실익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상당주의의무 이행에 따른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로 인해 선주, 선박회사 등의 피보험자에게 돌아오는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하여 다루었다. 결론에서는 선주, 선박회사등의 위험관리의 일환인 보